

부속서 8-가¹

금융서비스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 연금기금운용 · 보관 ·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 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적용범위 및 정의

2.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제8.1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3. 제8.1조에 규정된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 나.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 그리고
- 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또는 정부의 보증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활동

4. 제8.1조에 규정된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항나호 또는 제3항다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5. 제8.1조에 정의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규제

6.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7.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인정

8.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9. 미래의 것인지 또는 기존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8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쟁해결

10. 건전성 문제와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 중인 특정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다.